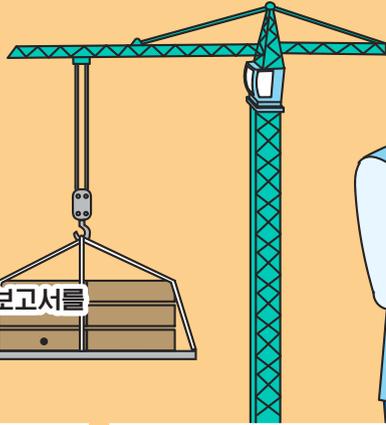




# 공정안전관리 12대 요소



## 공정안전관리제도

위험물질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한  
'중대산업사고'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 
작성·제출하여 심사·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

### 1. 공정안전자료

: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

### 2. 공정위험성평가

: 공정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

### 3. 안전운전 지침

: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

### 4. 설비점검·검사 및 유지·보수

: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

### 5. 안전작업허가

: 작업허가절차 준수

### 6. 도급업체 안전관리

: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

### 7. 근로자 등 교육

: 근로자 (임직원)에 대해 실질적인 PMS교육

### 8. 가동전 점검

: 유해·위험설비의 가동 전 안전점검

### 9. 변경요소 관리

: 설비 등 변경 시 변경 관리절차 준수

### 10. 자체감사

: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

### 11. 공정사고 조사

: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

### 12. 비상조치

: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

#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



## 중대재해처벌법이란? (중대산업재해부문)

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.
-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01

### 중대산업재해란?



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.

산업재해가 아니라면?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!

- ✓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
- ✓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- ✓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\*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
\*급성중독, 독성간염, 혈액전파성질병, 산소결핍증, 열사병 등 24개 질병

02

###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?



- ✓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
- ✓ '사업 또는 사업장'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써 법인, 기관, 기업 그 자체
- ✓ 다만, 개인사업자나 상시노동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)은 2024.1.27.부터 적용

03

###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?



책임주체:  
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

- ✓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
- ✓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·보건 관련 조직, 인력,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
※ 안전·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- ✓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지방공기업·공공기관의 장

04

###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?



책임주체: 개인사업주      보호대상: 종사자

- ✓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
- ✓ 노동자
- ✓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
- ✓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노동자·노무제공자